

안전한 지역생활
플랫폼을 선도하는

1등공단

2021년도

인권경영보고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목 차

I.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현황	1
II. 인권경영 추진개요	4
① 추진배경	4
② 추진체계도	4
③ 주요 추진성과	5
III. 인권경영 추진체계	6
① 윤리·인권경영 목표 및 중장기 전략	6
②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7
③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내·외부 지속 확산	7
IV.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8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9
② 체크리스트 개발(보완) 및 교육	9
V. 인권영향평가 결과	10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0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0
③ 인권영향평가 총평	11
④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11
VI. 인권경영(사업) 실행, 공개	11
① 인권경영(사업) 실행	12
②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12
VII. 구제절차의 제공	13
① 인권침해 구제절차	13
② 인권침해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개선 및 성과	13

붙임 1. 인권경영 선언문 1부.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기관운영, 주요사업) 1부. 끝.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현황

1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의 설립)
-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조례 제453호 1999. 7. 7.)

2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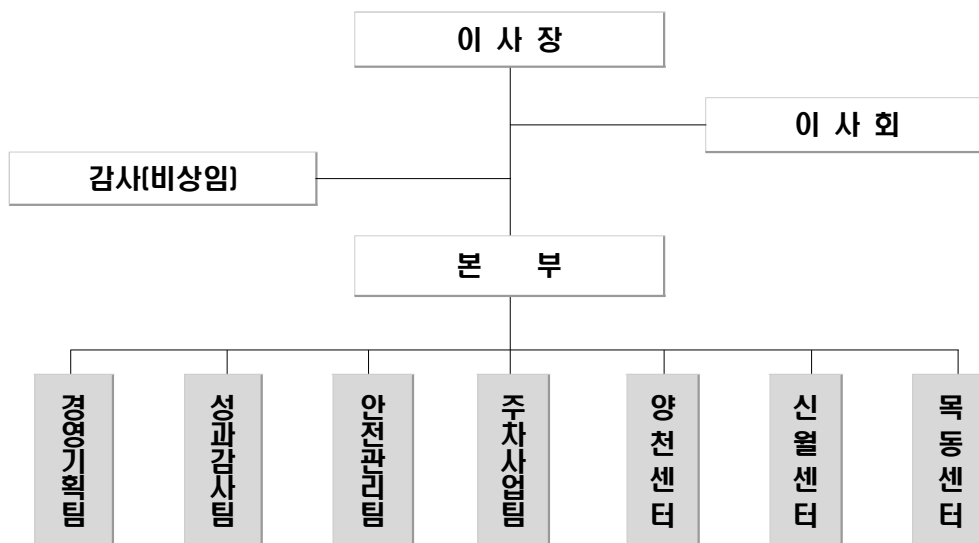
3 주요연혁

연 도	주요사항	비 고
2000	• 1월 17일 설립 등기(자본금 5억 원) •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주차장, 목동테니스장, 공원매점 수탁	
2001	•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수탁	
2002	• 견인보관사업 수탁, 양천구민체육센터 수탁	
2004	• 양천장애인복지관 수탁	
2005	• 해누리체육공원 수탁	
2006	• 어린이교통공원 수탁	
2007	• 양천장애인복지관 수탁 종료(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이관)	
2008	• 목동문화체육센터 수탁	
2009	• 계남다목적체육관 수탁 • 1본부 1실 6팀으로 조직개편(공영주차팀·거주자우선주차팀 통합 ⇨ 주차사업팀)	
2010	•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수탁	
2011	• 해누리타운, 공단본부 청사, 목동타운홀 수탁 • 1본부 1실 5팀으로 조직개편(기획홍보실·경영지원팀 통합 ⇨ 경영기획실)	
2012	• 공영주차장 2개소(가로공원주차장 주차장, 한마음주차장) 수탁	
2013	• 현수막게시대사업 수탁 • 1관 1실 5팀으로 조직개편(감사담당관 신설)	
2014	• 1본부 1실 5팀으로 조직개편(감사담당관 폐지)	
2015	• 공영주차장 3개소(현대41타워 옆, 한전 뒷길, 양천공원 옆) 수탁	
2016	• 1본부 7팀으로 조직개편(성과감사팀 신설) • 공영주차장 1개소 수탁(해맞이주차장) • 서울시 공영주차장 6개소 수탁	
2017	• 공영주차장 2개소(서서울주차장, 목사랑시장고객주차장) 수탁 • 용왕산실내배드민턴장 수탁	
2018	• 공영주차장 1개소(신월3동 여울주차장) 수탁	
2019	• 공영주차장 1개소(목3동 등마루주차장) 수탁 • 어린이교통공원 수탁 종료	
2020	• 공영주차장 2개소(신월2동 경창시장 고객주차장, 신월6동 마을사랑주차장) 수탁 • 건강힐링문화관 수탁	

4 경영 비전체계



5 조직도



6 주요 시설물 현황

문화 체육 시설		<p>양천구민체육센터 • 8,062.78㎡ • 체육관, 수영장 등 • 2002.10월부터 운영</p>		<p>신일문화체육센터 • 3,144.62㎡ • 체육관, 수영장 등 • 2000.02월부터 운영</p>
		<p>목동문화체육센터 • 3,322.70㎡ • 체육관, 수영장 등 • 2008.01월부터 운영</p>		<p>계남다목적체육관 • 2,938.52㎡ • 코트 15면 등 • 2009.01월부터 운영</p>
		<p>해누리체육공원 • 38,240㎡ • 인조잔디축구장 2면 등 • 2005.01월부터 운영</p>		<p>목동테니스장 • 16,658㎡ • 테니스(하드)코트 18면 등 • 2000.02월부터 운영</p>
		<p>목동타운홀 • 633.06㎡ • 탁구장, 문화실 등 • 2011.03월부터 운영</p>		<p>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 • 558㎡ • 배드민턴코트 4면 등 • 2017.12월부터 운영</p>
		<p>건강힐링문화관 • 6,999㎡ • 체육관, 문화시설 등 • 2020.12월부터 운영</p>		
주차 사업		<p>공영주차장 • 50개소 4,761면 • 직영 25개소, 위탁 35개소 • 2000.1월부터 운영</p>		<p>거주자우선주차 • 16개 동 2,194면 • 2001.11월부터 운영</p>
		<p>전인차량보관소 • 1,855㎡ • 72면(승용차 기준) • 2002.02월부터 운영</p>		
임대 기타		<p>해누리타운 • 15,152.67㎡ • 해누리홀, 아트홀 등 • 2011.01월부터 운영</p>		<p>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 • 684.7㎡ • 사무실 12개소, 주차장 등 • 2010.03월부터 운영</p>
		<p>현수막 게시대 • 관내 63개소 • 연립형 15, 저단형 48개소 • 2013.02월부터 운영</p>		

II 인권경영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기업의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기업에 의한 소비자의 건강권, 생명권 등 인권침해로 인해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책임 강조
 - 공기업에게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 요구
- 각국의 인권경영 이행 구체화
 - 유엔(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18~2022)」 확정
 -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목표로 선정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2 추진체계도

구 분		요구사항
1 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1.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3. 공단 내 각 부서 확산 4. 모든 협력사에 확산
2 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기관운영, 주요사업) 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3.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5.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3 단계	인권경영(사업) 실행, 공개	1. 인권경영(사업) 실행 2.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4 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1.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2. 구제절차 수립 3. 구제절차 시행 4.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08.)

3 주요 추진경과

연 도	주요사항	비 고
2018	• 인권경영체계 구축계획 수립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선언문 초안, 이행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인권경영선언문 공표 및 확산	
2019	• 인권경영 구체절차 등 외부기관 자문(지방공기업평가원 피드백컨설팅)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	
2020	•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및 공개	
	• 협력회사와 인권경영 이행 공동선언 및 인권경영 결과 공유	
	• 인권영화제 개최	
	•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	
	• 인권경영 구체절차 등 외부전문가 자문(한국행정연구원)	
	•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2021	• 중장기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및 공개	
	• 협력회사와 인권경영 결과 공유	
	• 영상 대면(온택트) 인권영화제 개최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	
	• 다국어 인권침해 신고 및 구체절차 안내	
2022	•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및 공개	
	• 영상 대면(온택트) 인권영화제 개최	

III 인권경영 추진 체계

1 윤리·인권경영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미션	공공시설의 가치창출과 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
비전	안전한 지역생활 플랫폼을 선도하는 1등공단!

윤리경영 비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주민중심 1등공단			
중장기 목표	부패·인권침해 ZERO! 주민이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			
전략방향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내부건제시스템 강화	윤리·인권 문화 확산
실행전략	윤리경영 추진체계 강화 윤리·인권 인프라 구축	경영관리 신뢰성 제고 윤리·인권 의식 내재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사전 예방활동 강화	윤리·인권경영 참여 확대 소통의 윤리·인권문화 확산

중장기 로드맵	정착기(2021~2022)	성숙기(2023 ~ 2024)	선도기(2025 ~ 2026)
	윤리·인권경영 재정비 투명·공정 문화 정착	윤리·인권경영 안정화 투명·공정 문화 성숙	윤리·인권경영 확산 투명·공정 문화 선도

성과지표	종합 청렴도평가 점수 인권영향평가 점수	경영공시 준수 교육훈련 목표 달성도	부서 감사 지적건수 사전심사제 운영 실적	주민참여 홍보목표 달성률
모니터링	정부정책 타 기관 우수사례 청렴도조사, 인권영향평가	예산회계자율통제서비스 윤리의식 자가진단 감질 발생위험 진단	감찰 및 윤리실천리더 활동 클린신고센터 민원신고	통합 의견 게시판 각종 설문 결과 보도자료

조직체계	실행조직	전담부서	심의·의결
	윤리경영책임관(부서장) 윤리실천리더 및 부서원	성과감사팀, 경영기획팀 윤리·인권경영 담당	CEO,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예산회계자율통제운영위원회

규범체계	공단규정	인권규범	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범죄고발 규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 복무규정 · 감사규정, 연봉규정 · 여비 및 회의수당 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시행내규 · 복지후생규정 · 업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헌장 · 윤리강령 · 임직원 행동강령 · 인권경영 선언문 · 고객서비스 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감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 고객응대 매뉴얼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단체협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 분	주요 내용					
인권경영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 지정 : 성과감사팀(2018.11.16.부터 동일) - 추진팀 구성 : 총괄(성과감사팀장), 인경경영담당 및 부서 윤리실천리더(7명) 					
인권경영 실행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이행지침(2018.11.16. 제정)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총 8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3명) - 위원구성 :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지역주민 2명, 본부장, 성과감사팀장, 노동조합 1명 - 주요임무 : 인권경영 정책전반에 의사결정,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등 					
	구 분	성 명	분 야	소 속	비 고	
	외부위원	김○○	근로자, 협력업체 인권	변호사	위원장	
		신○○	근로자, 협력업체 인권	변호사		
		양○○	청렴·반부패, 근로자 인권	노무사		
		장○○	주변 환경영향	주민대표		
	내부위원	권○○	사회적 약자, 근로자 인권	주민대표		
이○○		당연직	본부장			
안○○		당연직	성과감사팀장			
구○○	당연직	근로자 대표				
인권교육과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교육 : 인권경영 강사교육, 인권경영 포럼, 인권기관의 국내·외 인권연수, 인권영화제 등 내부교육 : 인권감수성, 인권경영 이론 및 인권영향평가 대응 실무, 인권영화제 등 온라인교육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단 스마트러닝 인권 교육과정 운영 ※ 집합교육(전문 강사) 실적 					
	교육내용	일 자	장 소	시 간	인 원	비 고
	4대 폭력예방 교육	2021.09.17.	구청 3층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1시간	106명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2021.09.08.~ 09.30.	온라인 비대면 교육(Zoom)	3~4시간	78명	임원 참석
	장애인식 개선 교육	2021.10.05. ~ 10.07.	양천구 장애인교육센터	2시간	22명	
	장애인권 교육	2021.11.22.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2시간	17명	
	※ 온라인교육 실적 : 4대 폭력 예방 64명, 갑질 예방 75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 60명, 장애인인식개선 56명 이수					

3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내·외부 지속 확산

구 분	주요 내용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 및 선포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선언, CEO 인권경영 메시지, 세계인권 선언 홍보영상 시청 등 - 인권경영 선언문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제공 - 임직원, 노조대표, 이해관계자 등(2018.12.10.)
협력회사와의 인권경영 공동선언 및 인권경영 결과 등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이행 공동선언 및 서명, 인권경영 이행경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공유 등 - (주)에스원 외 8개 협력회사 임직원 12명(2020.01.10.) - (주)에스원 외 11개 협력업체(2021.04.26.)
주민참여 온라인성과보고회 이사장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인권경영 주요성과 및 사업계획 이사장 발표 - 공단 유튜브 채널 “양과TV” 활용 -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490명(2021.12.21.)

인권경영 선포식	협력업체와 인권경영 공동선언	공단 홈페이지	주민참여 성과보고회
			

구분	주요내용	관련사진
내부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전자결재(그룹웨어) 게시판(윤리청렴방)에 자료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문화개선 ON” 의견수렴 채널 운영(상단에 고정) -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 실행력 강화를 “윤리·인권경영 실무협의체” 운영(2021. 6월부터, 총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추진현황 점검 및 결과 공유, 의견수렴 및 권고과제 추진 등 • 임직원 대상 온택트 인권영화제 개최(임직원 140명, 2021.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권교육 영상자료 “양상블” 상영, 특별민원 대응요령 교육 • BSC 고객관점 인권영향평가 지표 신설 및 반영(2020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결과 부서 BSC에 반영 • 메타버스 사무식 증장기 신(NEW) 비전 선포(임직원 91명, 2022.0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전략(친환경·책임·윤리경영) 발표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력업체 대상 온택트 인권영화제 개최(2021.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권교육 영상자료 “하루의 재발견” 상영 - 공단 유튜브 채널(양파TV) 활용, 주민·협력업체 등 116명 • 주민참여 온라인성과보고회를 통한 윤리·인권경영 주요성과 및 사업계획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490명(2021.12.21.) • 공단 홈페이지(윤리·인권경영 자료실)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영향평가 결과, 다국어 인권침해 신고 안내 • 인권경영 관련 언론보도 실적 17건(경향신문 외 13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 인권 보장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아프간여성 인권 보호 안전 보장 촉구 - “인권침해, 모국어로 신고하세요.” 다국어 신고채널 제공 등 	 
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회사와 인권경영 이행 공동선언 및 인권경영 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이행 공동선언 : (주)에스원 외 8개 협력회사 - 인권경영보고서 공유 및 전파(2021.04.26.) 	
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촉구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 이사장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촉구 • 타 기관(시설관리공단)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전파 	

IV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 >



1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평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공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대상 선정 								
	구 분	평가범위		대상부서					
	기관운영	기업활동 전반(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등)		경영기획팀, 성과감사팀					
주요사업	공단이 추진하는 주요사업(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사업)		시설사업팀, 3개 센터						
※ 주요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시설을 1년 단위로 변경하여 평가(2020년 주차사업 평가)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 총 8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위원구성 :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지역주민 2명, 본부장, 성과감사팀장, 노동조합 1명 - 주요임무 : 인권경영 정책전반에 의사결정,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등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 활용 - 기관운영(경영활동) 인권영향평가 지표(10개 분야 158개 지표) 심사 - 주요사업(사업수행) 인권영향평가 지표(5개 분야 14개 지표) 심사 ※ 주요사업 평가대상 선정은 현재 또는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선정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평가 - 점수 및 평가등급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100점	50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점 ~90점	89점 ~80점	79점 ~70점	69점 ~60점	59점 ~50점	49점 ~40점	39점 ~30점	29점 ~20점	19점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평가방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평가 - 1차 평가 : 평가지표별 담당위원이 실시(현장점검, 인터뷰 등) - 2차 평가 : 1차 평가결과를 전체위원과 공유하여 최종평가 실시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참석 수당 50만원(10만원 × 외부위원 5명) 								

2 체크리스트 개발(보완) 및 교육

구 분	주요 내용				
체크리스트 개발(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실무교육 후 체크리스트 확정 				
	구 분	체크리스트(2021년 기준)	개발(보완)사항	비 고	
	기관운영	11개 분야 161개 지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3개 지표 추가	윤리실천리더 (실행조직)	
주요사업	5개 분야 15개 지표	-			
실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기관 집합교육 및 실무 교육 				
	구 분	교육기관(주체)	교육일정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
	집합교육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1.06.18.	공공기관 인권경영과 영향평가 대응 (인권경영의 이해, 인권영향평가 절차 등)	윤리실천리더 (7명)
실무교육	성과감사팀 (진행 : 인권경영 담당자)	2021.08.10.	지표 개발(보완)에 대한 의견 조율, 평가자료 제출 및 현황 작성방법 등	윤리실천리더 (7명)	

V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구 분	주 요 내 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개최(2021.09.13.) : 총 7명 참석(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평가지표 : 기관운영 11개 분야 161개 지표, 주요사업 5개 분야 15개 지표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1등급” (평점 99.7점, 전년 대비 1.7점 상승)

구 분	결과 그래프	점 수 표		
		구분	평가지표	점수
기관운영 평가결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3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
		6	산업 안전 보장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0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100
		10	소비자 인권 보호	100
				평 점
기관운영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평균 99.7점으로 9등급 중 “1등급” 으로 나타남. 고용상의 비차별 : 업무직 등과 정규직의 평가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 환경권 보장 :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위해 공단에서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1등급” (평점 97.5점, 기존 대비 5.0점 상승)

구 분	결과 그래프	점 수 표		
		구분	평가지표	점수
주요사업 평가결과		1	공정운영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87.5
		3	안전보장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평 점
주요사업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평균 97.5점으로 9등급 중 “1등급” 으로 나타남 사회적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동출입문, 모성보호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바로 개선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갖고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함. 그리고, 다문화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공단 시설 이용 관련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 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해 줄 것을 권고함. 			

3 인권영향평가 총평

구 분	주 요 내 용
총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선언 이후 회의나 구체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근로자인권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의 지속적인 보호 ⇨ “완료” • 복지포인트 차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차이가 존재함 ⇨ “완료” •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항목 추가를 검토 바람 ⇨ “2021년 반영(예정)” • 아동노동의 금지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고, 산업안전보장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사업에서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고 절차와 매뉴얼도 잘 시행되고 있다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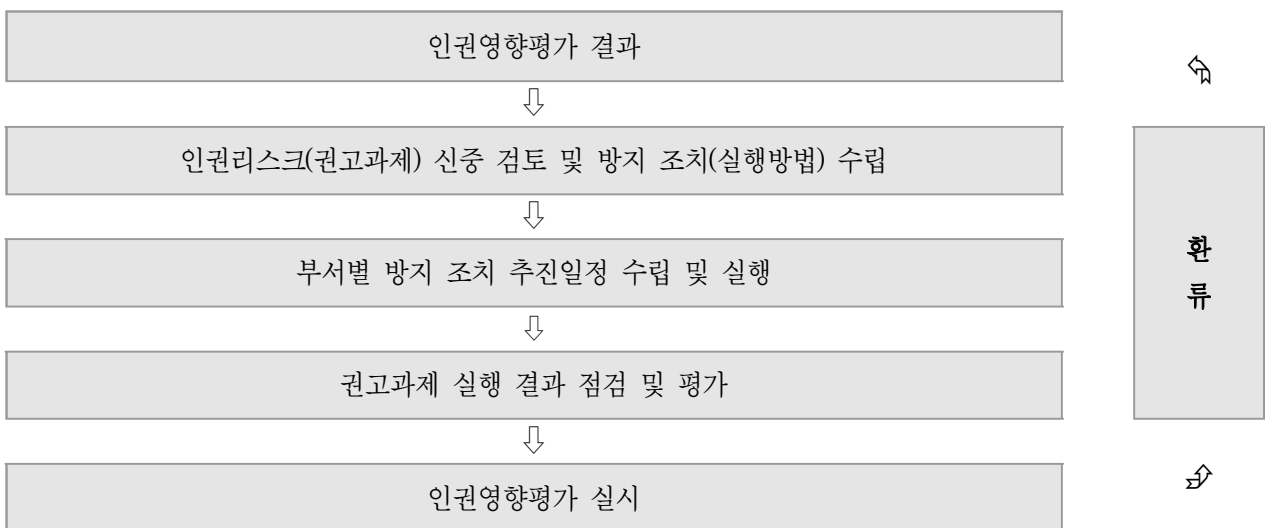
4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구 분	주 요 내 용
CEO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2021.09.23.)
내부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자결재(그룹웨어) 공유 • 윤리·인권경영 실무협의체 회의(총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권고과제 추진 의견수렴, 윤리·인권경영 추진현황(체크리스트) 점검 등
외부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홈페이지(윤리·인권경영 자료실) 게시 • 협력회사와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공유 : (주)에스원 강서지사 외 11개 협력회사 • 타 기관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 외부 확산을 위한 보도자료 제공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VI

인권경영(사업) 실행, 공개

< 인권경영(사업) 환류체계 >



1 인권경영(사업) 실행

○ 2020년 인권경영 권고의견 실행 : “모두 완료”

구 분	권 고 의 견	추진 실적
고용상의 비차별	• 업무직과 정규직의 복지 포인트 차등 해소	• 정규직과의 복지 포인트 차이 완전 해소 - 2021년도 복지 포인트 인상(800P ⇨ 1200P) ※ 공단 임원 포함 전 구성원 복지 포인트 통일
근무자 인권보호	• 근로자인권보호를 위해 감정도동자의 지속적인 보호	• 특별민원(폭언/폭행/성희롱 등) 대응요령 교육 실시 - 총 140명(온라인 교육) • 사업장 전화에 근로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실시 - 안내음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됩니다. (중략)지금 통화하시는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기 타	•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항목 추가 검토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여 평가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분야 3개 지표 추가

○ 2021년 인권경영 권고의견 실행 : “3건 완료, 2건 추진 중”

구 분	권 고 의 견	추진 실적
고용상의 비차별	• 업무직과 정규직의 병가 기준 차이 해소	• 정규직과의 병가 기준 차이 해소 - 업무직 취업규칙 개정 완료
환경권 보장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적극 노력 •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동출입문, 모성보호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시간을 갖고 개선	• 2021년 감축목표(32%) 초과 달성 : 67.9% 감축 • 계남다목적체육관 자동출입문 설치 완료 • 양천구민체육센터 기저귀교환대 설치 완료 • 신월문화체육센터 유모차 보관구역 설치 : 2022년 예정
사회적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 다문화인구 증가 관련 공단 시설이용 관련 정보 접근성 측면 미흡한 부분의 개선 및 보완	• 다국어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홍보 실시 - 다문화 인구 현황 분석, 다국어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안내문 제작과 인고침해 신고 채널 개설
기 타	• 평가지표의 신설 및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 2022년 평가지표에 반영(예정) - 벤치마킹 등을 통해 평가지표 신설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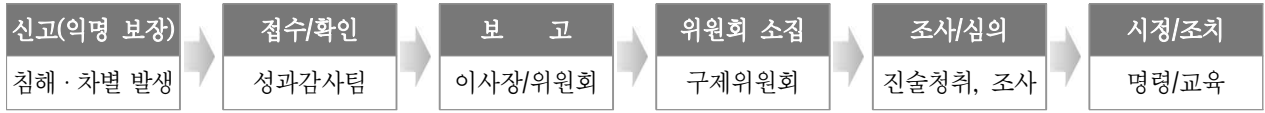
2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구 분	주요 내용
인권경영보고서 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온라인성과보고회를 통한 윤리·인권경영 주요성과 공유 - 이용회원 및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490명(2021.12.21.) • 협력회사와 인권경영보고서 등 인권경영 결과 공유(2021.04.26., 2022.02월) - (주)에스원 강서지사 외 11개 협력회사 • 외부 확산을 위한 보도자료 제공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2021.09.16.) • 타 기관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보고서 공유(2021.10.27., 2022.02월) • 공단 홈페이지(윤리·인권경영 자료실) 게시(2021.09.24.) • 공단 전자결재(그룹웨어)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유(2021.09.24.) • 윤리·인권경영 실무협의체 회의(2021.09.30. / 총 11명)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권고과제 추진 의견수렴, 윤리·인권경영 추진현황(체크리스트) 점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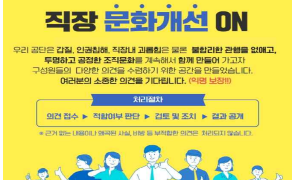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협력회사와 공유	타 기관과 공유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p>2021년도 인권경영보고서</p> <p>양천구시설관리공단</p>	 <p>수신자 수신자번호 (경유) 제목 2020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보고서 공유 및 전파</p> <p>1. 귀 사의 유감한 발송을 기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유행하는 인권경영 성과 공유를 위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양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 성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결과를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송부해 드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발일 2020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보고서 1부, 문.</p>	 <p>수신자 수신자번호 (경유) 제목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전파</p> <p>1. 귀 기관의 무감한 발송을 기립니다. 2. 인권영향의 경계 및 확산을 위하여 우리 공단의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간과 같이 공유전파해주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발일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부, 문.</p>	 <p>인권경영 자료실 Welcome to the YIS Homepage</p> <p>총 8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제목</th> </tr> </thead> <tbody> <tr> <td>8</td> <td>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다국어 지원 안내</td> </tr> <tr> <td>7</td> <td>2021년 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td> </tr> <tr> <td>6</td> <td>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2020.12.24.)</td> </tr> </tbody> </table>	번호	제목	8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다국어 지원 안내	7	2021년 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6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2020.12.24.)
번호	제목										
8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다국어 지원 안내										
7	2021년 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6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2020.12.24.)										

VII 구제절차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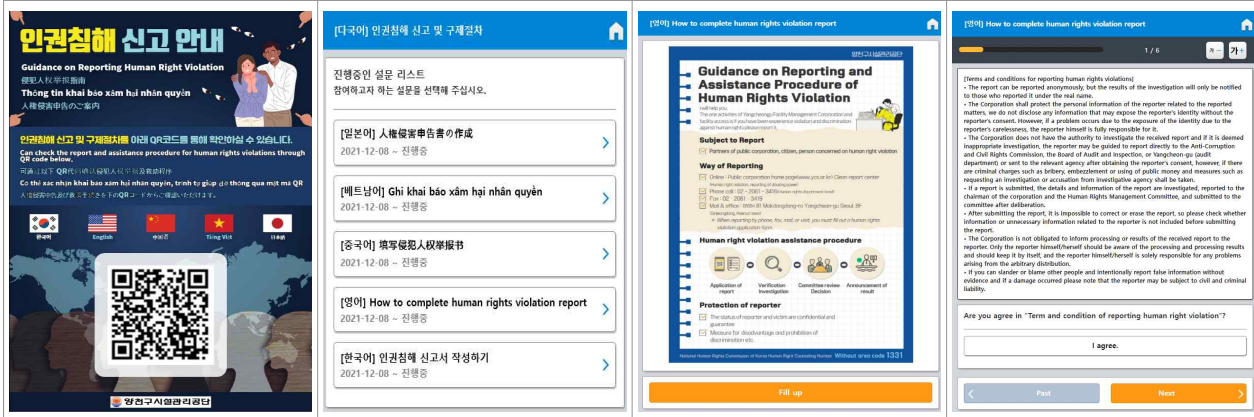
1 인권침해 구제절차



2 인권침해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개선 및 성과

구분	주요내용	비고
외부자문 점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피드백컨설팅 결과(지방공기업평가원) 인권경영 운영 관련 경영자문 결과(한국행정연구원 이○○박사)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절차 개선 및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총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반영) 구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 다국어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안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어 지원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한국어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안내, 바로 신고도 가능 보도자료, 카카오톡 채널,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게시판 및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홍보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온라인 의견수렴 채널 “직장문화 개선 ON”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전자결재(그룹웨어) 게시판(윤리청렴방)에 상단에 고정 배치 인권침해와 차별 신고,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구제절차 안내 및 경영에 반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진정 접수 : “없음” 	

※ 다국어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안내



인권침해 신고 안내문

언어 선택

신고 및 구제절차 안내

신고서 작성

【붙임 1】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지역가치 창출로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열린 공기업으로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어떠한 인권침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장애, 출생지,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붙임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기관운영, 주요사업)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분야 1.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준중 정책선언	1	회사는인권준중의책무를다하려고한다는취지의정책선언을했다.					
	2	인권정책선언은회사의최고위수준에서표명된것이다.					
	3	회사의인권정책선언은회사내부와외부전문가및이해관계자들과의적절한자문을통해만들어졌다.					
	4	회사의인권정책선언은해당회사에서특별히문제될가능성이큰중요한인권현안이무엇인지가표명되었다.					
	5	인권정책선언은공개적이며,모든직원과이해관계자들에게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정기적으로재검토되고개선된다.					
	소 계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	회사는인권영향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했다.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3	인권영향평가실행시회사내·외부의전문가를참여시킨다.					
	4	기관(기업)활동으로인해부정적인권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개인또는집단과의협의를한다.					
	5	자회사나협력회사의활동도인권영향평가의범위에포함시킨다.					
	6	인권영향평가는정기적으로실시한다.					
	소 계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	회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3	회사는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4	회사는인권에부정적영향을미치거나그럴가능성이발견된경우즉시필요한조치를취한다.					
	5	자회사나협력회사에의한인권침해가발견될경우,회사차원에서대응한다					
	소 계						
인권경영 성과	1	회사는인권경영성과를정량적지표또는정성적평가를통해서확인한다.					
	2	인권경영성과확인시내·외부전문가와이해관계자로부터의견을수렴한다.					
	3	인권경영성과를정기적으로보고한다.					
	4	인권경영성과보고는공개적으로이루어진다.					
	5	보고는회사의활동을평가하기에충분한정보를담고있다.					
	6	보고는시간의추이에따른변화를알수있을만큼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7	보고내용에대한검증을거친다.						
		소 계						
구제절차 마련	1	회사의활동으로인해인권예부정적인영향을받은사람에대해구제절차를제공한다.						
	2	구제절차는국내법또는국제법등인권규범에기반을두었다.						
	3	구제절차는접근과이용이용이하다.						
	4	구제절차에따른결과를관련이해관계자에게신속하게제공한다.						
	5	피해자가회사구제절차이외다른절차를이용하려는경우그에성실하게조력한다.						
	6	구제절차는개별적인문제해결에그치지않고,그에합당한근본적원인을개선하는과정을포함한다.						
		소 계						
합 계								

▶ 분야 2. 고용상의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용상 비차별	1	회사는고용과관련하여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신분,출신지역등을이유로차별하지않는다.					
	2	회사는노동자모집·채용시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않은조건을제시하지않는다.					
	3	회사는임금외에복리후생제도에서노동자를차별하지않는다.					
	4	회사는노동자의교육·배치및승진에서노동자를차별하지않는다.					
	5	회사는노동자의정년,퇴직및해고에서노동자를차별하지않는다.					
		소 계					
고용상 남녀 비차별	1	회사는여성노동자를모집·채용할때그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않은용모·키·체중등의신체적조건,미혼조건등을요구하지않는다.					
	2	회사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제공한다.					
	3	회사는임금외에복리후생제도에서여성노동자를차별하지않는다.					
	4	회사는노동자의교육·배치및승진에서남녀를차별하지않는다.					
	5	회사는노동자의정년,퇴직및해고에서여성노동자를차별하지않는다.					
	6	회사는여성노동자의혼인,임신또는출산을퇴직사유로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는다.					
	소 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	회사는비정규직노동자임금이유로사업장내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를하는노동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지않는다.					

	2	회사는비정규직임금이유로회사내에서의업무와관련하여 제공되는편의에있어서차별을하지않는다.						
	3	회사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한다.						
	소 계							
외국인 근로자 차별	1	회사는외국인노동자라는이유로부당하게차별하여처우하지않는다.						
	2	회사는외국인노동자가자신이가진종교적,문화적권리를 누릴수있도록배려한다.						
	3	해외에서활동하는기관(기업)(자회사,지사등)은현지문화와제도를존중한다.						
	소 계							
합 계								

▶분야 3.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1	회사는노동조합의설립을허용한다.					
	2	회사는노동조합등을통해노동자가자유롭게모임을가지고 근로조건등에대해소통할수있도록허용한다.					
	3	회사는노동조합활동을포함하는노동자모임을위해회의실 등편의를제공한다.					
	4	회사는정기적으로노동자의대표와단체교섭사항에대해협의하여결정한다.					
	소 계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	노동자가노동조합에가입또는가입하려고하였거나노동조합활동을하였다는이유로노동자를해고하거나불이익한처우를하지않는다.					
	2	노동자가어느노동조합에가입하지아니할것또는탈퇴할것을고용조건으로하지않는다.					
	3	노동자가특정한노동조합의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지않는다.					
	4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노동자에게이들이유로불이익한처우를하지않는다.					
	5	노동자가정당한단체행위에참가하거나노동위원회에사업주의위법행위를신고하거나그에관한증언등을하였다는이유로노동자를해고하거나불이익한처우를제공하지않는다.					
	소 계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한 이행	1	회사는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성실하게협의한다.					
	2	회사는노동자대표에게노동자대표로서의활동수행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3	회사는경영상의이유로불가피하게해고를하는경우에노동자대표에게사전에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한다.					
	4	회사는노동자대표가단체협상을요구할때의사결정권이있는회사대표가참여하여협상한다.					
	5	회사는단체교섭을통해성립된단체협약의이행을위해지속					

		적으로노력한다.						
		소 계						
노동조합 부채시 대안적조치	1	회사에노동조합이없는경우회사는직원들이독립적으로노동관련문제를토론할수있도록하는대안적인조치를제공한다.						
	2	노동조합이없더라도노동자들이노동조건에대하여자유롭게논의하도록회의실등편의를제공한다.						
		소 계						
		합 계						

▶분야 4. 강제노동의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노동 금지	1	회사는모든종류의강제노동을금지하고있다.					
	2	회사는공정하고투명한고용계약을위해노력하며,노동자가이해를이해할수있도록배려한다.					
	3	회사는노동자의행동을제약할목적으로각종신분증·여행증명서등의제출을요구하지않는다.					
	4	회사는노동자가원하지않는의무적초과노동을실시하지않는다.					
	5	회사는노동자를폭행,협박,감금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서강제노동을강요하지않는다.					
	6	회사는노동자에게부채를안긴후빚을담보로한강제근로를실시하지않는다.					
	7	노동자는근무시간이후원하는경우언제든지작업장을떠날수있다.					
	8	노동자는누구나합리적인수준의사전통지이후에회사를그만둘수있다.					
		소 계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예방	1	회사는외국에서활동하는자회사나협력회사에서강제노동이일어나지않도록별도의조치를취한다.					
	2	자회사나협력회사에서강제노동을이용하거나그에연루될가능성이높을경우,이를지속적으로감시한다.					
	3	인신매매,채무노역등에관여하는업체에서인력을공급받지않으며,이들에의해생산된물건을구매하지않는다.					
		소 계					
		합 계					

▶분야 5. 아동노동의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연소자	1	회사는15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지않는다.					

고용금지	2	회사가해외에서활동하는경우에도15세미만의자를고용하지않는다.					
	3	회사는중학교에재학중인18세미만의자를고용하지않는다.					
	4	회사는교육프로그램을빙자하여고용이금지된연소자를고용하는일이없다.공공기관인권경영매뉴얼					
	5	회사는서류를통해노동자의나이를확인한후고용하며,신분위조를방지하기위해신분증명서의확실성을검토한다.					
	6	출생증서가없는국가에서활동하는경우,적절하게나이를확인하는대안적방법을고려한다.					
	소 계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1	연소자를고용한것을알게된경우,즉시고용을중지시키기보다는교육기회를제공하거나다른구제조치를취한다.					
	2	15세이상18세미만인자를고용하는경우,근로조건을명시한근로계약서를작성한다.					
	3	15세이상18세미만인자를고용하는경우,근로시간은1일7시간,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					
	4	15세이상18세미만인자를고용할때는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를받는다.					
	5	의무교육대상자를고용하는경우,그고용으로인하여의무교육이중지되지않도록조치한다.					
	6	회사는아동들의건강,안전,도덕의식에해로운작업을규정한정책을수립하였다.					
	7	회사는장시간노동,야간노동에18세미만노동자를고용하지않는다.					
	8	연소자들이노동에적합한체력을갖추었는지확인하기위해건강진단을실시한다.					
소 계							
합 계							

▶ 분야 6. 산업안전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작업장 안전	1	회사는작업장의안전장구와시설이늘안전하고위생적이라도유지한다.					
	2	회사의비상탈출구가장애물로막혀있지않으며,항시이용가능하도록관리되고있다.					
	3	회사내의환기와실내온도,조명,음용수,세면대,의자,작업복,음식보관시설,숙소,화장실등이적절하게관리되고있다.					
	4	회사는작업장의안전장구와시설이늘안전하고위생적으로유지되도록모니터링하는절차를가지고있다.					
	5	회사는유해물질로부터노동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다.					
소 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2	회사는임신중이거나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					

		자를도덕상·보건상위험한사업에근로시키지않는다.					
	3	임신을한노동자가요청이있는경우,해당노동자의근무지를변경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4	장애인들이회사내에서이동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조치하고있다.					
	소 계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등	1	회사는노동자들이직무수행에필수적인보호장비를제공하며산업안전에관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2	노동자가위험한곳에서작업하는경우,위험성에관한정보가노동자에게제공되고,노동자가원하는경우추가적인정보에대한접근을보장한다.					
	3	작업장의위생과안전에대한정기적인교육이관련전문가에게의해서이루어진다.					
	4	회사는노동자의건강장해를유발하는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등은법이정하는분류기준에따라분류하고관리한다.					
	5	회사는노동자의건강을보호·유지하기위하여노동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한다.					
	소 계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지원	1	회사는노동자가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리면요양비등을지원한다.					
	2	요양보상비등을지급하는경우지체없이지급한다.					
	3	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정책을수립,운영한다.					
	소 계						
합 계							

▶ 분야 7. 책임있는공급망관리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예방	1	회사는공급업자,하청업자,자회사기타주요협력회사의인권보호에대한의무이행을요구한다.					
	2	회사는협력회사의인권보호상황을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협력회사를선정하는절차를가지고있다.					
	3	회사는모든계약에공급업자와다른동업자들이모든업무영역에서인권을존중해줄것을기대한다는내용을포함시킨다.					
	4	회사는협력회사와계약시인권보호·존중에관한내용을서면으로요구한다.					
	소 계						
모니터링 실시	1	회사는설문이나현장방문등의방법을통해공급업자,하청업자,자회사기타주요협력회사의인권보호준수여부를모니터링한다.					
	2	회사는모니터링결과협력회사의인권침해사실이드러나면시정을요구하고,시정이되지않을경우관계의단절을고려한다.					
	소 계						
보안담당 직원예의한	1	회사는보안담당직원예의한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한다.					

인권침해방지	2	회사의보안담당직원은인권보호와관련한별도의교육을받는다.						
	3	회사가보안사무를외주하는경우,계약서를통해명시적으로인권보호준칙의준수를요구한다.						
	4	회사가보안사무를외주하는경우,인권보호준칙이준수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한다.						
	소 계							
합 계								

▶분야 8. 현지주민의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 보호	1	회사는토지소유주를비롯하여토지의소유권이전에영향을받는당사자와협의한다.					
	2	관련법령에서회사활동과관련하여지역민과의협의를요구하는경우이를준수한다.					
	3	회사는토지구매시법률상소유자가누구인지확인하며,지역주민의법과관습에따른권리자가있는지확인한다.					
	4	회사는지역주민의재산권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강제수단을이용하지않는다.					
	5	회사는토지의소유권이이전됨으로인해심각하게피해를입는당사자나제3자들과협의한다.					
	6	회사는부적절한강제이주에가담하거나이주를해야하는주민들로부터부당이득을챙기지않으며,그에게적절한보상을해준다.					
	7	법률에서이주자의보호에관한규정이있을경우이를준수하고법률취지에맞는대책을수립,제공한다.					
	소 계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	회사는타인의지식을이용할때그것이지적재산권에의해서보호되는대상이아닌지사전에조사한다.					
	2	회사는저작권이나지적재산의소유권을확인할때는관습적으로보호되는지적재산권인지점검토한다.					
	3	모든지적재산권의소유자와협상할때는설명을한후동의를얻으며,필요한경우적절한보상을제공한다.					
	소 계						
합 계							

▶분야 9. 환경권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및유지	1	회사는환경경영체제를수립및유지하고있다.					
	2	회사는환경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고평가한다.					
	3	환경개선을위한측정가능한목표를설정하고정기적으로목표가적절한지를점검한다.					

	4	회사는회사활동뿐만아니라,제품과서비스의개발과제공에서환경성과를개선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						
	5	회사는환경과관련하여정기적으로노동자를교육하고훈련한다.						
	소 계							
환경정보의 공개	1	회사는환경과관련한정보를일반대중과노동자에게제공한다.						
	2	환경정보는정기적으로공개하며,환경사고가났거나이해관계자의요구가있는경우는가급적신속하게관련정보를공개또는제공한다.						
	3	환경정책을개발할때,노동자,고객,공급자지역사회등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정보를공개하고이들과협의한다.						
	소 계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접근의 원칙	1	환경문제에대해서예방적접근의원칙을견지한다.						
	2	새로운제품을개발하거나사업의확장을고려하는경우,이것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며,필요한경우환경영향평가를실시한다.						
	3	환경영향평가결과심각한환경영향의가능성이발견되면이를방지하거나완화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						
	4	환경훼손에대한과학적입증이없다고하더라도,심각한환경훼손의가능성이없지않다면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한다.						
	5	대규모환경오염피해를대비하여환경책임보험에가입하였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소 계							
비상계획 수립	1	환경훼손과환경재해를방지하거나완화하고통제하기위한비상계획을수립한다.						
	2	회사는노동자를대상으로사전에정해진비상사태대응지침에따른대응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3	회사는비상사태대응계획을해당지역및당국과함께개발했으며,현지주민도대피를포함하여비상사태대응방법을알고있다.						
	4	회사는비상사태가발생한경우지역사회,관련당국,외부비상사태응역회사에게즉시통보할수있는경보장치를마련해두었다.						
	5	회사와병원간의거리가먼경우응급조치를위한시설과의료진을확보하고있다.						
	소 계							
합 계								

▶ 분야 10. 소비자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	회사는제품의결함으로인해소비자의생명,건강,안전을해치지않도록하기위해,제품의설계,제조,표시를함에있어서법령의기준에따라필요한주의를기울이고있다.					
	2	회사는제품을공급함에있어제조,설계또는표시등에결함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평가를실시한다.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 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 조건, 제품 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소 계						
제품 결함 시 조치	1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소 계						
소비자 사생활 보호	1	회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3	소비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소 계						
합 계							

▶ 분야 11. 직장내 괴롭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직장내 괴롭힘 금지	1	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등) 관련 사규(규정, 예방지침 등)가 마련되어 있다.					
	2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소 계						
합 계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분야 1. 공정운영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공정운영	1	공단은 체육시설을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권리계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2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자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및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3	공단 체육시설 이용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4	공단은 체육시설의 하자, 관리소홀 등 사고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소 계							

▶분야 2. 사회적약자이용편의시설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사회적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1	공단의 체육시설 출입구는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공단 체육시설은 사회적약자의 이용에 맞게 화장실 및 출입구, 계단 등의 시설이 되어있다					
	3	공단 체육시설은 사회적약자의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4	공단 체육시설은 모성보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소 계							

▶분야 3. 안전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안전보장	1	공단 체육시설은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공단체육시설은긴급환자발생을대비하여구급장비를갖추고있다.(자동심장충격기,의약품등)					
	3	공단 체육시설은 재해, 재난을 대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응급조치, 소방훈련, 사고예방 교육 등)					
소 계							

▶분야 4. 근무자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근무자 인권보호	1	현장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체육시설 근무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는 용품들이 지급되어 있다					
	3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자에 의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부터 근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소 계							

▶분야 . 지역주민환경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제출자료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 환경보장	1	공단은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소 계							



www.ycs.or.kr